

#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5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도병두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4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재정비 및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 예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4조)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3항)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신설(안 제8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신설(안 제13조)

-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 정비(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연구 용역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용역결과의 제출 및 공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심의대상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sup>1)</sup>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심의대상을 기존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은 3천만원)에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확대함.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類似度) 검사결과 확인 및 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14조에서는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용역 제출기한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방안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됨.

행위에 대한 처리를 신설하여 용역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능감을 확보하였다는 데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